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분에 대한 관리 소홀

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, 서구, 북구

내 용

구「지방세기본법」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권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 송달⁴⁸⁾에 따른 부과처분을 하는 대신에 징수유예등⁴⁹⁾을 할 수 있고,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권자는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.

1. 부과철회 후 사후관리 소홀

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고 징수가 어려워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

48) 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.

1.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
2.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
3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(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)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49) 고지유예, 분할고지,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(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)

및 부과철회를 한 경우 과세권자는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회하고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발견된 재산이 징수가능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그러나 광주광역시 북구 등 3개 구에서는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 후 재산이 발견되었음에도 부과 또는 징수 절차 미이행 등 지방세 부과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취득세 등 7건, 263,767,890원을 부과 누락하였다.

2. 공시송달과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를 동시에 실시

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및 부과철회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, 공시송달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송달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어서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 처분을 행할 수 없다.

그런데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이미 공시송달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 처분을 하여 재산세 2건, 18,692,940원을 부과 누락하였다.

조치할 사항 **광주광역시 북구청장, 서구청장, 동구청장은**

[시정] 과세대상임에도 부과 철회한 등록세 등 9건, 282,460,830원에 대해 부과 처분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